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1. 7. 9.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21년 6월 30일
- 회부일자: 2021년 7월 2일

3. 제안이유

-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성범죄 관련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 폐쇄,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와 행정능률 향상 및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한편,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부개정 (안 제5조)
 - 1) 「평생교육법」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단체위임 사무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수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(안 제5조 제4호)
 - 2) 관할구역 내 각종학교(대안학교)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함
 - 가)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확정·정기승급 및 대체인력풀 관리(안 제5조 제9호)
 - 나) 노동인권교육 및 2개 미만 검진기관 선정 승인과 출장검진 승인(안 제5조 제39호)
 - 다)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에 관한 지도·감독(안 제5조 제40호)
 - 라) 다음 사항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(안 제5조 제41호)
 -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

- 학교폭력사안처리에 관한 사항
-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
- 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에 따른 사항
-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-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
-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

3)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교과서 지원에 관한 지도·감독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
(안 제5조 제40호)

4) 관할구역 내 사립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의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8조(취업자의 해임요구 등) 및 제67조(과태료)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함 (안 제5조 제42호 가목, 나목)

○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·보완

- 학생 건강검사를 위한 2개 미만 검진기관 선정 승인과 출장검진 승인에 대한 근거 규정에 대한 관련 조항 수정 (안 제5조 제39호 나목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‘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수리’, ‘관할구역 내 사립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의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8조(취업자의 해임요구 등) 및 제67조(과태료)에 관한 사항’ 과 함께 관할 구역 내 각종학교(대안학교)의 사무 중 ‘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·정기승급 및 대체인력풀 관리’ 등 10가지 사무를 새로 교육장에게 위임하고, 기존에 교육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무 가운데 ‘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교과서 지원에 관한 지도·감독에 대한 사항’ 을 삭제하면서,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